

버스, 택시 모바일 운전자격증 고시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버스, 택시 운전자격증(모바일)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기 위한 서식을 규정함

2024. 1. 30.

국토교통부장관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버스, 택시) 운전자격증(모바일)

성명:

생년월일:

자격증번호:

자격취득일:

사 진

2.5cm×3cm

위의 사람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

직인

년 월 일

85mm×54mm[백상지 150g/㎡]

운수종사자 유의사항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본 자격증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.
- 「도로교통법」 위반으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본 자격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관할관청에 문의 바랍니다.

○ 재검토기한

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